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규정 3-1-26

규정번호 3-1-26
제정일자 2016.5.16
최근개정 2024.7.24
개정차수 3차 개정
관리부서 교무입학팀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“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”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와 학칙 14조의 4에 의거 명지전문대학(이하 ‘우리대학’으로 한다.) 입학 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및 자체영향평가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18.08.27.,2024.7.24)

제2조(적용 대상)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우리대학 입학전형에서 실기고사(예체능)를 제외한 우리대학고사(논술 및 필답고사, 면접 및 구술고사, 신체검사, 실기 및 실험고사,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등)로 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① 입시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계획수립 및 출제 여부에 관한 평가 사항

② 입시고사의 출제영역, 내용, 방법, 채점기준 및 시행에 관한 평가 사항

③ 자체영향평가 결과의 차년도 입학전형에 반영에 관한 사항

④ 평가결과에 따른 관리 및 입시고사의 개선에 관한사항

⑤ 기타 자체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

제4조(구성) ① 입학전형 시 학과별 독자고사(논술 등 필답고사, 면접·구술고사, 신체검사, 실기·실험고사 및 교직 적성·인성검사 등)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심의·평가하기 위하여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교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위원은 우리대학의 교직원 및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총장이 위촉한다.(개정 2018.08.27)

④ <삭제(2024.7.24.)>

제5조(회의)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간사) 위원회의 업무는 교무처에서 관장하며,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담당 업무부서 팀장으로 한다.(개정 2017.02.27., 2018.08.27.)

제7조(자체영향평가의 시기 및 반영) ① 자체영향평가는 우리대학고사가 종료된 후에 시행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모집시기(수시 및 정시)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② 자체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한다.

제8조(결과의 공시) 자체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

까지 우리대학 입시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.

제9조(수당 등 지급)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(개정 2018.08.27)

② 자체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위원 또는 관련전문가에게 조사 등을 의뢰한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.

제10조(기타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임명된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위원은 본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,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(제1조, 제4조제4항)